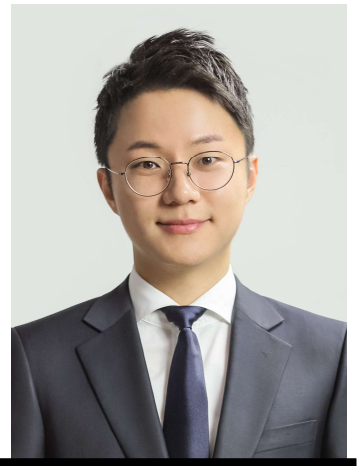


# 제59회 제1차 변리사 시험 대비 디자인보호법 기출·판례 강의



**이준권** 변리사  
제56회 변리사 시험 합격  
[jungonna20@gmail.com](mailto:jungonna20@gmail.com)

강의 소개

〈기출 문제 풀이〉

## WHY ?

Primary	반복 출제	디자인보호법 판례 심사기준
---------	-------	----------------------

디자인보호법 1차 시험 대비에 있어 기출 문제 풀이는 1순위입니다.  
기출 문제를 분석해보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반복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출 풀이를 통해 시험 범위 대부분의 내용(디자인보호법, 판례, 심사기준)을 회독할 수 있습니다.



## HOW ?

단원별 기출문제	(호환성)	연도별 기출문제
-------------	-------	-------------

단원별로 재구성된 기출 문제 풀이를 통해 디자인보호법을 전반적으로 1회독 합니다.  
연도별로 구성된 기출 문제를 제공하여, 스스로 실전처럼 문제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기출문제와 단원별 기출문제는 서로 연동되어 상세한 해설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WHAT ?

14개년	140문제	700지문
------	-------	-------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출제된 기출 문제를 풀이합니다.  
14개년에 대한 140문제이며, 총 700개의 지문을 풀이하게 됩니다.

〈판례 소개〉

Major	Minor	Summary
대법원 판례	특허법원 판례	중요 판례 요약
사실관계와 사안 포섭 문구가 중요한 판례들에 대해서 원문 내용 수록	최근에 판시된 특허법원 판례 소개	중요 판례들에 대해서는 판례 요약본 제공

판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례 원문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판례들에 대해서는 원문을 통해 해당 판례의 메시지를 이해하도록 하고, 판례를 이해한 후에는 판례 요약본을 통해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의대상

- ▶ 디자인보호법 1차 기본 강의를 수강하신 후 복습이 필요하신 분
- ▶ 본격적인 디자인보호법 회독에 앞서 기출 문제를 통해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싶으신 분
- ▶ 시험 전 기출 문제를 통해 빠르게 디자인보호법 1 회독을 하고 싶으신 분

제공자료

〈단원별 기출문제〉

제35조 (관련디자인)
<p>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함)과인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함)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p> <p>② 제4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 관련디자인과인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 관련디자인과인 유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4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이 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p> <p>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4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이 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p>

163. [58-07-1]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본디자인의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어야 한다.<sup>163)</sup>
164. [58-07-2] 관련디자인의 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여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up>164)</sup>
165. [58-06-3]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관점에서 신규성이나 선출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요건을 만족하여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sup>165)</sup>
166. [58-07-4] 무효심판 제1종 중인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관련디자인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심사를 보류한다.<sup>166)</sup>
167. [53-06-3] 기본디자인 출원에 대한 기결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는 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기결결정을 한 후 심사보류 통지를 한다.<sup>167)</sup>

163) (O) [해설]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함)과인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함)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디자인의 유사성은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로 한다.)

164) (O) [해설] 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유무 여부

165) (O) [해설]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함)과인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함)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66) (O) [심사기준] 무효심판 또는 이의신청에 제1종 중인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관련디자인 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권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심사보류 하도록 한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먼저 기결결정을 한 후 심사보류 통지를 한다.

167) (O) [심사기준]

〈연도별 기출문제〉

2021년도 제58회 디자인보호법 1차

31. 디자인등록출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보호법 제19조(보정)항목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교정이 불리한 지역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1회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은 디자인보호법 제47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않아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은 디자인보호법 제22조(절차)의 종단에 따라 종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은 디자인보호법 제23조(종단된 절차)의 수계에 규정된 자가 종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하며,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이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 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친척(친·인척)이나 그의 배우자(배우자)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32. 비발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이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을 비발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디자인을 비발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디자인보호법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디자인만을 설정등록 할 때까지 그 디자인을 비발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비발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관계 신청을 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한 비발청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 ④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비발디자인을 열람 청구하여 해당 비발디자인을 열람하게 된 경우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비발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그 디자인에 관하여 특허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면을 제시하여 결코하지 않더라도 권리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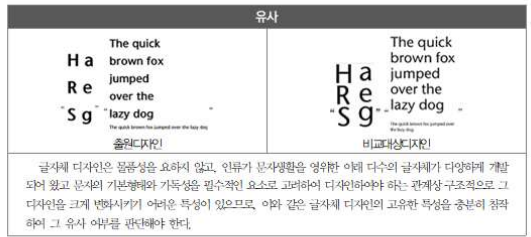
〈연도별 기출문제 정답표〉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1	① (X) 36 (O) 547 (O) 223 (O) 7 (O) 9 (O) 490 (O) 246	② (X) 40 (X) 275 (O) 223 (O) 27 (X) 10 (O) 535 (O) 662	③ (X) 42 (O) 377 (X) 223 (X) 3 (X) 76 (O) 520 (X) 680	④ (O) 43 (O) 609 (O) 223 (O) 2 (X) 11 (O) 521 (O) 331	⑤ (X) 44 (O) 529 (O) 223 (O) 499 (X) 12 (X) 439 (O) 663		
	① (X) 369 (O) 647 (O) 515 (O) 65 (X) 615 (X) 296 (O) 54	② (O) 367 (O) 660 (O) 516 (O) 74 (X) 589 (X) 282 (O) 57	③ (X) 369 (X) 661 (O) 517 (O) 75 (X) 640 (X) 289 (O) 70	④ (X) 371 (O) 676 (X) 518 (X) 55 (O) 632 (X) 255 (X) 68	⑤ (X) 372 (O) 554 (O) 519 (O) 58 (O) 73 (O) 62		
	① (O) 274 (O) 53 (X) 687 (X) 434 (O) 697 (X) 473 (O) 123	② (X) 612 (O) 71 (X) 686 (O) 436 (O) 696 (X) 474 (O) 134	③ (X) 206 (O) 60 (X) 689 (O) 436 (O) 696 (O) 475 (O) 136	④ (X) 549 (X) 63 (X) 690 (O) 437 (O) 700 (X) 476 (O) 137	⑤ (O) 614 (O) 66 (O) 691 (O) 438 (O) 701 (O) 477 (X) 133		
	① (O) 523 (X) 370 (X) 297 (O) 552 (O) 563 (O) 73 (O) 548	② (O) 670 (O) 373 (X) 297 (X) 582 (X) 564 (X) 348 (O) 688	③ (O) 545 (X) 374 (X) 297 (O) 616 (O) 566 (X) 298 (O) 205	④ (X) 546 (O) 375 (X) 297 (O) 583 (X) 567 (O) 297 (O) 329	⑤ (O) 688 (O) 376 (X) 297 (O) 630 (O) 568 (O) 292 (X) 231		
① (O) 305 (O) 524 (X) 530 (O) 128 (O) 535 (O) 153 (O) 312	② (X) 306 (O) 525 (O) 531 (O) 130 (O) 36 (O) 159 (X) 314	③ (O) 307 (O) 526 (X) 532 (O) 131 (O) 555 (X) 160 (O) 319	④ (X) 308 (O) 527 (X) 533 (O) 136 (X) 557 (O) 154 (O) 322	⑤ (O) 309 (X) 528 (X) 534 (X) 132 (O) 558 (O) 155 (O) 328			
① (X) 646 (X) 85 (X) 277 (O) 323 (O) 413 (O) 198 (X) 196	② (X) 659 (O) 86 (O) 278 (O) 324 (O) 414 (X) 178 (X) 197	③ (X) 676 (O) 288 (O) 279 (O) 325 (X) 415 (O) 167 (X) 198	④ (O) 678 (O) 289 (O) 280 (X) 326 (X) 416 (O) 177 (O) 199	⑤ (O) 679 (O) 289 (O) 281 (O) 327 (O) 417 (O) 188 (X) 200			
① (O) 183 (O) 311 (O) 625 (O) 298 (O) 498 (O) 228 (O) 14	② (O) 184 (O) 318 (O) 626 (O) 290 (X) 498 (X) 224 (X) 151	③ (O) 185 (O) 320 (O) 627 (X) 291 (O) 491 (X) 225 (O) 156	④ (O) 186 (X) 321 (X) 628 (O) 292 (O) 492 (X) 230 (X) 636	⑤ (X) 187 (O) 323 (O) 629 (O) 299 (O) 493 (X) 232			
① (X) 428 (X) 457 (X) 80 (X) 177 (O) 378 (O) 236 (O) 108	② (O) 470 (X) 421 (O) 81 (O) 181 (O) 379 (O) 315 (O) 109	③ (O) 429 (X) 422 (O) 82 (O) 185 (O) 380 (O) 238 (X) 110	④ (O) 430 (X) 433 (O) 84 (O) 186 (O) 381 (X) 239 (O) 112	⑤ (O) 471 (O) 459 (O) 85 (O) 187 (X) 382 (O) 237 (O) 113			
① (X) 51 (X) 170 (O) 648 (X) 692 (O) 340 (O) 617 (X) 584	② (O) 553 (O) 174 (X) 649 (X) 693 (O) 343 (O) 618 (O) 585	③ (X) 124 (X) 175 (O) 650 (X) 694 (O) 339 (O) 619 (O) 586	④ (X) 84 (X) 180 (O) 651 (X) 695 (O) 342 (X) 620 (O) 587	⑤ (O) 295 (X) 201 (O) 652 (X) 696 (O) 339 (O) 631 (O) 588			
① (O) 687 (O) 244 (O) 241 (O) 4 (O) 502 (X) 667 (X) 565	② (X) 682 (O) 245 (O) 242 (O) 5 (O) 501 (O) 672 (O) 560	③ (X) 683 (O) 472 (X) 243 (O) 6 (O) 502 (O) 673 (O) 559	④ (X) 684 (X) 349 (O) 316 (O) 7 (X) 503 (O) 674 (X) 581	⑤ (X) 685 (O) 398 (O) 317 (O) 8 (O) 504 (O) 683 (O) 52			

〈Major 판례〉

03 글자체디자인 유사판단 判例 (2012후597)

18



글자체 디자인은 문물성을 요하지 않고, 인위적 문장생활을 영위할 위해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고 본질의 기본형태와 기능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음은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거절결정(디)]

【판시사항】

[1]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정한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판단할 때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시점에서 하이라디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사적인 특징이 유사하더라도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비난: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정한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적용된다.** 한편 **글자체 디자인은 문물성을 요구하지 않고, 인위적 문장생활을 영위할 위해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고 본질의 기본형태와 기능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음은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연도별 기출문제와 단원별 기출문제의 번호를 연동시켜 두었습니다.
- 연도별 기출문제를 시간 내에 푸시고, 해설이 궁금한 경우 단원별 기출문제의 해설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Minor 판례〉

〈Summary〉

01 신규성상실예의 주장의 효력 判例 (2019하7986)

[디자인] 자기실시디자인에 의한 신규성상실 예외의 효력이 그 디자인에 관한 문물의 구체적 내용 중 공개된 사항에 대하여도 미치지 못하며, 등록디자인은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특허법원 2021. 01. 22. 선고 2020하4099 판결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피고는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출원 이전 공지된 것이어서 신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공지된 주장은 하되, 특허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등록디자인은 신규성이 부진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 심리를 하였다.

【판시 요지】

(1) 자기실시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6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적용 여부를 살핀다.  
원고는 2015. 3. 13. 「K심유지」 상호로 직물 등의 판매업에 영영한 후, 자기실시디자인의 「리버티 헬던」을 판매했고, A와 B의 카카오를 대외에서 리버티 헬던을 판매한 사실은 사실이다. 그 후 원고는 A에 대해 리버티 헬던을 제조하였고, A는 이를 수입한 후 그가 출원하는 내이바 플로그에 선행디자인 6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A와 그 동일자는 「리버티 헬던」을 포함한 직물 제품 부서에 소재한 내이바 플로그를 제조하는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주요하게 판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심판단계에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일보다 4개월 정도 앞선 시점에 최초로 각종 원단의 운 오모디인 판매업자 A와 B의 카카오를 대외에서 그 디자인의 대상물인 「리버티 헬던」이라는 직물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공개하였고, 카카오 대외방은 사적인 대외방에서 초대된 사람들 뿐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공간이지만 대외의 상대방과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날짜가 최초 공개일이 될 수 있다. 이는 원고의 상술의 예외의 주장을 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자기실시디자인, 선행디자인 6은 모두 「직물」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대상이 되는 문물이 동일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자기실시디자인, 선행디자인 6은 내이바, ① 전체적인 모양은 모두 도형화된 오리, 오리의 모양이 좌우방향 또는 수직방향으로 나란히 반복하여 배열되어 있고, 상·하로 대칭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점, ② 오리의 모양은 빨간 부리와 검은색 눈, 노란 몸통으로 형성되어 있고, 동일한 오리의 형상이 불규칙하게 상·하, 좌·우로 배열되어 있고, 그 구성 비례가 비슷하게 형성된 점, ③ 일부 오리 머리의 모양은 두건 쓴 오리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④ 두건 쓴 오리의 모양이 불규칙하게 상·하, 좌·우로 배열되어 있고, 그 구성 비례가 비슷하게